

『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4월 27일

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채 동 익

나. 제안이유

○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4. 2. 7. 일부 개정됨에 따라, 동법
시행령 제6조1항 【별표1】 “부설주차장설치기준”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,
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
기준을 강화하여 점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.

○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강화
하여,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【별표2】

• 단독주택 :

- 시설면적 50㎡ 초과 150㎡ 이하 : 1대

- 시설면적 150㎡ 초과 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

- 공동주택 :
 -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주차대수(세대당1대 정도)
-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5조의 시설물의 인근범위 강화
 - 직선거리 15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이내 →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**【별표2】**

라. 참고사항

-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,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4. 2. 7.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조1항 **【별표1】** “부설주차장설치기준”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점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,

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강화하여, 주차장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.

- 주요 내용으로는,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단독주택은
 - 시설면적 50㎡ 초과 150㎡ 이하는 1대이며,
 - 시설면적 150㎡ 초과시에는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이며,
 공동주택은
 -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 대수로서 세대당1대 정도이고

-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5조의 시설물의 인근범위를 강화하여 당초, 직선거리 15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이내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였고,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【별표2】와 같이 강화하였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,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